##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상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020

발의연월일: 2025. 3. 18.

발 의 자:안상훈·김성원·김선교

이성권 · 서천호 · 유용원

박덕흠 · 김예지 · 백종헌

최보윤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「담배사업법」에 따른 지정소매인에 대해서만 영업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(展示) 또는 부착하 는 행위를 제한할 뿐 외부광고는 허용하지 않고 있음.

그런데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이 같은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전자담배 판매업소 외부에 전자담배에 관한 광고물 부착이 허용 되고 있음. 그 결과 전자담배 판매업소 앞을 지나가는 청소년들은 전 자담배를 홍보하는 광고물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음.

이에 전자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도 영업소 내부에서만 광고물을 전시(展示) 또는 부착하도록 하고, 영업소 외부에 서는 그 광고내용을 볼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9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항).

법률 제 호

##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4제1항제1호 본문 중 "지정소매인의 영업소"를 "지정소매인 또는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자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의 영업소(이하 이 조에서 "영업소"라 한다)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전단 중 "「담배사업법」에 따른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"을 "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자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, 「담배사업법」에 따른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의4(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	제9조의4(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
지 또는 제한) ① 담배에 관한	지 또는 제한) ①
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	
한하여 할 수 있다.	
1. <u>지정소매인의 영업소</u> 내부에	1. <u>지정소매인 또는 제23조제1</u>
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	항제2호에 따른 전자담배를
광고물을 전시(展示) 또는 부	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
착하는 행위. 다만, 영업소 외	의 영업소(이하 이 조에서
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	<u>"영업소"라 한다)</u>
전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	
그러하지 아니하다.	<u>.</u>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제조자등은 제1항에 따른	②
광고를 「담배사업법」에 따른	<u>제23조제1항제2호에 따</u>
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으로	른 전자담배를 직접 소비자에
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	게 판매하는 자, 「담배사업
우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	법」에 따른 도매업자 또는 지
이 한 광고는 제조자등이 한	<u> 정소매인</u>
광고로 본다.	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